

# 장 학 규 정

(재)성암육영회



## 성암육영회 장학규정

제1조(목적) 본 육영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수혜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구분) 본 회의 장학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학금 지급
2.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3조(수혜대상자) 수혜자 선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대학교 이상에 재학하는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면학하기 곤란한 자

제4조(수혜자 선정방법) 수혜자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장학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본 회 사무처의 선정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5조(사무의 위임) 본 회 이사장은 수혜대상자를 관계 기관에 위임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수혜자의 심사 방법) 수혜자의 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에 의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소속 대학장에게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혜자의 계속) 제3자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수혜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은 1학기를 단위로 하고 그 학기분을 당해 학기 초에 지급한다.

제10조(장학금의 계속) 수혜자로 선정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고자 할 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신청절차와 범위의 제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본 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본회는 수혜대상을 학교, 학과를 지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연과학 또는 기술분야를 중시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장학금을 받아 수학하는 자는 학업성적, 연구진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또는 본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수혜자의 정원) 수혜자의 정원과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본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에 계·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에 정해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 시 행 세 칙

(재)성암육영회



## 성암육영회 장학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성암육성회 장학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규정 제3조 제1항의 대학생 이상의 학생이라함은 4년제대학 대학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2. 규정 제3조 제1항의 우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학기말 학업성적이 평균 80점(100점기준) 이상인 자
  - ② 학기말 학업성적 순위가 동학년 당해학과 학생재적수의 100분의 10이내인 자
3. 규정 제3조 제1항의 행실이 타의 모범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사상이 건전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② 품행이 방정하여 타인에게 촉망받는 자
  - ③ 장차 국가사회에 유익하게 기여하리라고 인정되는 자
4. 규정 제3조의 경제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함을 말한다.
  - ① 가정이 빈곤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 소속 학교장은 수혜대상자가 국비 또는 기타 장학금 등을 받고 있지 않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 신학기 개시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장학금지급신청서(서식 제1호)
- ② 추천서(서식 제2호)
- ③ 학업성적증명서
- ④ 이력서
- ⑤ 호적등본
- ⑥ 친권자, 부양의무자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 ⑦ 주민등록등본
- ⑧ 사진 (명함판 탈모상반신)
- ⑨ 서약서(서식 제4호)

제5조 규정 제8조에 의하여 장학금을 계속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서 지정한 기일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장학금계속지급신청서 (서식 제2조)
- ② 학업성적증명서

제6조(장학금의 지급정지)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1. 실격: 장학금의 지급을 완전히 중단한다.

- ① 학업성적이 선발기준 이하일 때
- ② 정학이상의 학사징계를 받았을 때
- ③ 장학금을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④ 서류상의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
- ⑤ 전학, 전과, 휴학 등 해당 학교에서 이탈할 때. 단, 전과한 학과가 본 회 장학금 지급대상학과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기타 규정 제3조에 명시된 수혜요건이 소멸되었을 때

2. 중지: 지급을 일시 중단하며 원상복귀 시 지급을 계속할 수 있다.

- ① 취혜중 군에 입대하거나 국방상의 목적으로 동원되었을 때

3. 회수

- ① 장학금등이 수혜목적에 사용되기 전에 수혜요건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② 본회 이사회에서 회수하라는 결의가 있을 때  
단, 수혜자가 규정 제3조의 해당하는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 또는 수혜자는 자체없이 본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제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수혜자는 학업성적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각1부씩 본회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업성적증명서(매학기말)

2. 장학금 수혜학기 중에 연구실적이 있을 때는 학교장 및 본인이 연서하여 그 실적을 당해 학기말 전에 본회에 보고를 요한다.

제8조 규정 및 본 세칙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이사장은 당학기 개시 30일전에 장학금의 수혜대상자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관계대학에 배부한다.

## 부 칙

1. 본 세칙의 개·폐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세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세칙은 서기 19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